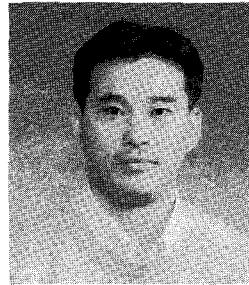


# 기장 의무 꼭 준수해야 손해 없다



박 유 일

(서울경기양계농협 경제사업부 대리)

**소** 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계인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매년 양계산업에 소득은 줄어드는데 비하여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료공급업자와 양죽인의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되고, 장부 기록을 하지 않아 불성실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양죽인이 의외로 많아 지난 1월 15일 서울경기양계농협에서 실시한 세무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양계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농업분야(양계) 세무 신고

-오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그동안 농업분야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추정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2월 31일에 소득표준율(4.7%)이 폐지되어 2002년부터 기장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연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농장은 단순부기에 의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연 수입금액 3억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근거하여 기장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자 중 50%가 넘게 복식부기에 의

한 기장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는 적용시기를 2005년 12월까지 유예하였다.

결국 2002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월 25일까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신고와 1월 30일까지 매입·매출계산서 신고를 필해야하고, 기장신고자와 더불어 연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오는 5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 2. 양죽농가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갖추려 보면

1)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첫째, 가장 큰 불이익의 예는 사업에 손해가 났을 때 장부를 기록·보관하면 손해를 그대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났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수입보다 지출경비가 커서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복식 부기의무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 받을 수 없다.

## 2) 사업에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소득세는 실제 자기가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그 손해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1. 표준소득율과 기준경비율과의 세액 차이

구 분	수 수	15,000		20,000		30,000		산출근거
		표 준	기 준	표 준	기 준	표 준	기 준	
	수입금액	252,000	252,000	336,000	336,000	504,000	504,000	연간마리당 수입 280개×60원=16,800
비 용	사료비		164,250		219,000		328,500	연간마리당사료소비액 120g×365일×250원=10,950원
	가축비		37,500		50,000		75,000	가축비마리당 2,500원
	임대료							송금명세등(세금명세서)
	인건비							연말정산서명세
	기준경비		17,640		23,520		35,280	수입금액의 7%가정 "미확정"
	비용계		219,390		292,520		438,780	
	소득금액	11,844	32,610	15,792	43,480	23,680	65,220	표준소득율 4.7%
	소득공제	4,600	4,600	4,600	4,600	4,600	4,600	4인가족기준
	과세표준	7,244	28,010	11,192	38,880	19,080	60,620	
	산출세액	651	4,141	1,114	6,098	2,534	11,867	
	가산세	65	414	222	1,219	506	2,373	20,000수이상복식부기의무자20% 가산세 적용
	납부할소득세	716	4,555	1,336	7,317	3,040	14,240	
	납부할주민세	71	455	133	731	304	1,424	
	부담세액계	787	5,010	1,469	8,048	3,344	15,664	

\* 1월 15일 서울경기양계농협 세무 교육 자료 인용

## 3) 표준소득율 적용시와 기준경비율 적용시 세액차이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당국에서 일률적으로 일정규모에 대하여 소득율을 업종별로 나누었다. 농업분야는 4.7%를 적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기준경비율은 오는 3월에 확정되는데 세무사에 의하면 대략 수입금액의 7%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산란계 1만5천수, 2만수, 3만수 사육농가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보았다. 1만5천수 사육농가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787천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5,010천원이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2만수와 3만수 사육농가의 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기준경비율로 적용으로 2만수 사육농가는 6,579천원, 3만수 사육농가는 12,320천원 더 납부해야 한다(표1 참조).

## 4)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방법은?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 예납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분납신청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란에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개